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27호

2019년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너지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너지분야)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7월 0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 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산업의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초고난도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기술을 확보

1-2. 지원대상분야

- 성공가능성이 낮지만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의 난제에 도전하는 초고난도 기술

분야	세부사업	'19년 예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19억원
에너지효율향상	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5억원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1단계	2단계
지원내용	선행연구	본 연구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참여기관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원기간	2년 이내	5년 내외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50억원 내외/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난제정의서 참조)	
선정범위	과제별 3개 내외 (경쟁형 R&D*)	1개 과제
기술료	비징수	징수 (참여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납부)

- 경쟁형 R&D 과제로 접수결과 2:1 이하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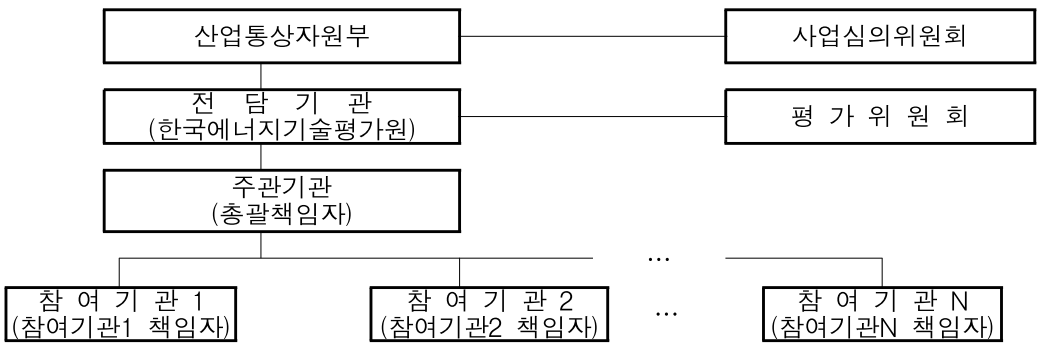
  *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수행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

- 단계별 협약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2단계 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하더라도 2단계로 협약을 체결함

- 1단계 1차년도 개발기간은 9개월로 하며, 2차년도 개발기간은 12개월임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및 현물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가능하나,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참여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참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연구소, 대학 등)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참여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참여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연구소, 대학 등)	필요시 부담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1단계) 기술료 비징수
- (2단계)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참여 영리기관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기관의 기술료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1)]
대기업	매출액의 **4**%
중견기업	매출액의 **2**%
중소기업	매출액의 **1**%

1)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이며, 착수기본료는 면제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1월 8일)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1월 8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수행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용역 내역서(금액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유형)** 초고난도 과제 :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기술로 개발 완료 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나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과제

○ **(공모형태)** 창의적 R&D 수행을 위해 난제·목표만 제시(해결방법은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제안)

□ **지원대상 사업 목록**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관	과제특징
신재생 에너지	1	실리콘 태양전지의 이론 한계효율(30%)을 극복하는 슈퍼 태양전지	비영리기관	제한없음	초고난도
	2	투명한 태양전지	비영리기관	제한없음	초고난도
에너지 효율향상	1	카르노 효율 한계에 근접하는 히트펌프 기술	비영리기관	제한없음	초고난도

* 첨부의 각 과제별 난제정의서 필히 확인 요망

4-2.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기업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하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제도의 '성실수행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함.
단,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난제정의서 주제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난제발굴을 위해 기획에 참여한 난제발굴위원장이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난제정의서 내 발굴위원장 참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과제참여→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9. 7. 8(월) ~ 2019. 8. 6(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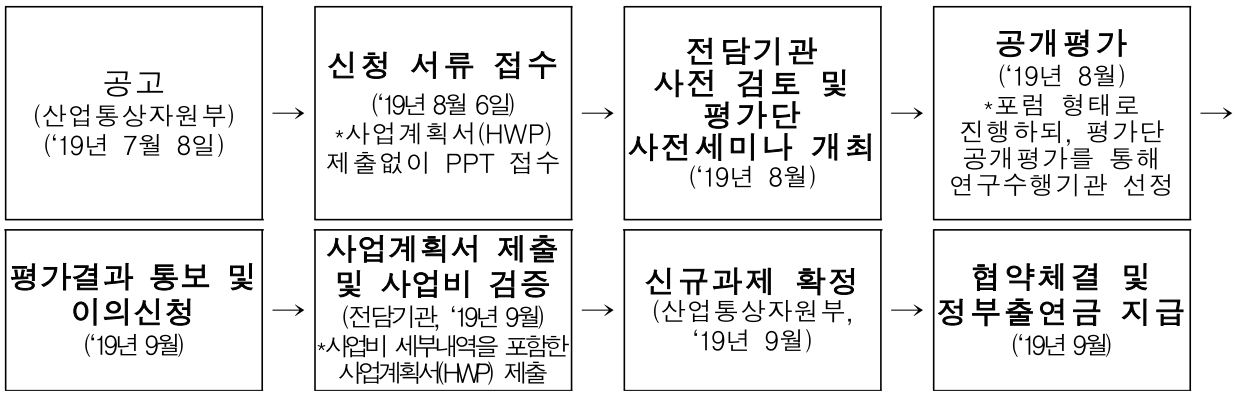
○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기획실(02-3469-8312~3)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평가절차 상세 내용

- 발표자료 접수 : 기존의 정형화된 사업계획서(HWP)와는 달리 PPT형태로 제안서 접수
- 전담기관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 평가 : 다수의 과제가 접수된 경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공개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평가단 사전세미나 : 난제정의서 및 신청서류를 평가 전날에 사전검토(off-line)하고, 공통질의서 도출
- 공개 평가 : 포럼 형태로 진행하되, 평가단 고득점 순으로 연구수행기관 선정, 온라인 사전등록(참관 신청)을 통해 참관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비 검증 : 협약 전 과제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유도(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제28조 제8항, '15.12.21)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발표자료(PPT) 구성항목(평가항목)

○ 난제 주제에 대해 *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

1. 해결하려고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2. 현재 기술의 한계는 무엇인가?
3.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독창성, 창의성 등)
4. 왜 우리팀이 해야 하는가? (전문성, 역할분담 등)
5. 난제를 해결할 경우 누구에게 도움이 되며, 무엇이 달라지는가?
6. 어느 정도의 개발기간과 금액이 필요한가?
7. 성능 및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중간 및 최종 방법은 무엇인가?
8. 멤버십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

* 주관기관은 수요기업 중심의 유료의 "알키미스트 기업 멤버십"을 구성・운영하고, 멤버십 기업은 과제 성과발표 시 우선적으로 참석하고, 개발된 기술의 IP실시권에 대해 우선협상권을 부여 받음

○ PPT 발표자료는 상기 평가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추가 내용은 자유롭게 구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30분 이내로 발표)

○ 지원대상 과제 : 평가단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를 3개 내외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최고・최저 점수 제외)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9. 7. 8(월) ~ 2019. 8. 6(화)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9. 7. 15(월) ~ 2019. 8. 6(화) - 발표자료(PPT)는 별도의 형식 제공 없이 자유롭게 작성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9. 7. 16(화) ~ 8. 6(화) 18:00까지** ○ 접수마감 : **2019.8.6.(화)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발표자료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발표자료 (PPT 작성)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주관기관, 개발내용 등 입력) 온라인 업로드(PPT를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각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영리기관 (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동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안내문'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단계는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수행 결과가 공개 활용되어야 함

○ 2단계에 영리기관이 참여할 경우 경상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선정 후 협약 전에 전담기관이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결정될 수 있음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난제정의서에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 또는 2:1이하 경쟁인 난제에 대해서는 동일 난제정의서로 재공고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평가 당일 과제 발표, 질의응답 등 모든 과정이 대중매체 등을 통해 공개 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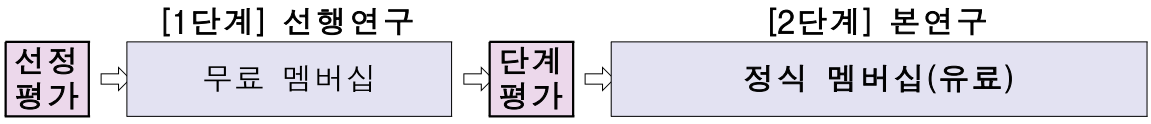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 및 멤버십 기업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수요기업 중심의 '알키미스트 기업 멤버십' 운영

○ 주관기관은 개발될 기술·제품에 관심을 갖는 수요기업 중심의 기업 멤버십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단계 평가시 기업 멤버십 구성・운영(안)을 평가요소로 검토할 예정
* 선행 연구기간에는 수행기관별 무료로 멤버십을 운영하며, 본연구 시 멤버십에 참여할 기업은 소정의 비용(추후 확정)을 주관기관에 지불하고 가입



○ 개발된 기술의 IP 실시권에 대해 '알키미스트 기업 멤버십'에게 우선협상권를 부여하고, 실시계약을 통해 기술에 대한 전용권 실시를 할 수 있음

* 해당 성과물을 소유한 수행기관(비영리, 영리)과 멤버십 회원사간 실시계약

○ 참여기업은 성과물을 직접 실시하거나, 멤버십 기업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여 실시계약 체결 할 수 있음

* 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한 기업이 기술 실시를 원할 경우, 멤버십 가입을 통해 우선 협상권을 부여 받고 협상결과에 따라 전용 실시 가능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TEP 사업관리시스템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 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컨소시엄 참여신청"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난제정의서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너지분야) 총괄 : 융합기획실(☎ 02-3469-8312~3)

○ 난제정의서 문의

세부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 02-3469-0000)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신재생기획실	태양광PD : 8486 태양광PM : 8335
효율향상	신산업기획실	효율향상PD : 8480 효율향상PM : 8348